



國 際

動 向



### 37國 五輪記章保護條約서명 —批准書寄託은 11국—

1981年 9月 26日 나이로비에서 체결된 올림피적 기록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 조약에署名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베니, 브라질 등 37개국으로 이들署名국들은 따로 조약批准書를寄託해야만 비로소 조약當事국이 될 수 있다.

나이로비 조약에署名하지 않은國家라도 WIPO 회원국이거나 UN과關聯을 맺고 있는其他專門機構,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同盟 혹은 UN의會員國으로서加入書를寄託한 경우에는 조약當事국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나이로비조약의批准書나加入書를寄託한國家, 日字 및發效日을 나타낸 것이다.

國 家	寄託日字	發效日字	備考
케냐	1981. 11. 18	1982. 9. 25	批准書
에티오피아	1982. 2. 17	1982. 9. 25	加入書
赤道기니	1982. 8. 25	1982. 9. 25	"
이집트	1982. 9. 1	1982. 10. 1	"
파데말라	1983. 1. 21	1983. 2. 21	"
콩고	1983. 2. 8	1983. 3. 8	批准書
튜니지아	1983. 4. 21	1983. 5. 21	"
카타르	1983. 6. 23	1983. 7. 23	"
그리스	1983. 7. 29	1983. 8. 29	"
印 度	1983. 9. 19	1983. 10. 19	"
우간다	1983. 9. 21	1983. 10. 21	加入書

(WIPO 提供)

### 英 新種植物保護國際協約批准 —9月 24日字로 發效—

英國은 1961年 12月 2일에 制定되어 1972年 11月 10日 제네바에서 改正되었던 新種植物保護를 위한 國際協約(1978. 10. 23字)의批准書를 1983年 8月 24日寄託했다.

同協約은 英國에 대하여 1983年 9月 24日에 發效하였다.

UPOV告示 No. 29, 1983. 8. 29  
(WIPO 提供)

### 벨지움 부다페스트條約加入 —12月 15日字로 發效—

벨지움은 1977年 5月 28日 부다페스트에서締結된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의 國際承認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의加入書를 1983年 9月 15日寄託했다.

同條約은 벨지움에 대하여 1983年 12月 15日에 發效했다.

부다페스트告示 No. 33, 1983年 11月 19日  
(WIPO 提供)

### 온두라스 WIPO加入 —11月 15日字로 會員國發效—

온두라스는 1983年 9月 15日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設立協約(스툐흘름改正協約, 1967.



7. 14)의 加入書를 1983年 8月 15日 寄託했다.  
온두라스는 WIPO 豫算分擔金 等級 C에 속한다.

同協約은 온두라스에 대하여 1983年 11月 15日에 發效하였다.

WIPO 告示 No. 124, 1983. 8. 16  
(WIPO 提供)

### 룩셈부르크 니스協定批准

#### —商標要部分類協定丘—

룩셈부르크는 標章登錄目的을 위한 國際商品·서비스分類에 관한 니스協定(체네바改正協定, 1977. 4. 13)의 批准書를 1983年 9月 16일에, 商標要部의 國際分類의 設定을 위한 비엔나協定(1983. 6. 12)의 批准書를 1983年 11月 16일에 각각 寄託하였다.

니스協定은 룩셈부르크에 대하여 1983年 12月 21일에 發效하며 비엔나協定은 批准國과 加入國數의 合計가 정족수에 달할 때 별도로 告示된다.

(WIPO 提供)

### 西獨 第2醫藥用途에 特許性認定

#### —聯邦最高裁判所 判示—

西獨聯邦 最高裁判所는 지난 9月 이미 알려진 醫藥物質의 第2醫藥用途에 대해 特許性을 認定하는 判決을 내렸다.

이것은 冠狀動脈疾患의 治癒, 血壓降下劑로서 이미 市販되고 있는 醫藥物質에 대해 새로 운 藥效 즉 腦疾患治癒에 使用하는 것에 관한用途를 허용을 認定한 것이다.

이 判決은 西獨의 新特許法下에서 내려진 것으로 앞으로 西獨 國內에서는 물론이고 第2醫藥用途에 관해서 같은 規定을 두고 있는 EPO에서의 審查에도 多大한 影響을 미칠 것이다.

(特許 News 提供)

### 國際辦理士聯盟 優先權制度改善案

#### —一期間經過直後出願은 認定해야—

國際辦理士聯盟(FICIP)執行委員會는 1982年 9月 27일에서 10月 2일까지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會合을 갖고 파리協約下의 優先權制度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案을 내놓았다.

優先權主張期間內에 出願하지 아니한 경우의 權利喪失에 관하여 같은 파리同盟會員國들이라도 서로 달리 取扱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어떤 國家에서는 法律上 또는 慣行上 一般除斥期間과 優先權主張에 關한 除斥期間과를 달리 取扱하고 있다.

따라서 同盟會員國들은 出願人이 優先權主張期間內에 出願하려고 努力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期間經過後에야 비로소 該當 特許廳에 出願한 경우에 優先權主張期間經過直後에 出願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優先權主張을 認定하도록 制度를 補完해야 한다.

(WIPO 提供)